

##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김현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결혼이주로 한국에 왔지만 별거나 이혼 이후 본국에 귀환한 여성들의 귀환 결정과 귀환 경험을 분석한다. 현재의 다문화가족 담론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내 정착과 출산 및 양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성들의 유입 과정이나 이혼과 별거 이후의 삶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이주자의 적응과 통합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주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내소날리즘을 벗어나 이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결혼의 급증만큼 별거 및 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이 해체된 후 이주여성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자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남거나 귀환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베트남과 몽골 방문 시 면접한 귀환 여성과 이혼 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체류권이나 양육권과 관련되어 한국 남편이 행사하는 권력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일방적으로 귀환을 당하거나 법적 청산을 하지 않은 채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도피성 귀환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이주는 끝나지 않은, 지속되는 삶의 과정이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사회가 맺는 관계, 즉, 한국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한다. 이주여성의 귀환 이후 재정착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주제어:** 국제결혼, 귀환, 이주, 이주여성, 방법론적 내소날리즘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hmkim2@yonsei.ac.kr

『젠더와문화』 제5권 2호(2012) pp. 113-145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혼 신화를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수만큼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출과 국제결혼 부부의 별거가 늘어나고 있고, 사별과 이혼을 통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 건수는 2002년 380건, 2003년 547건, 2004년 1,567건, 2005년 2,382건, 2006년 3,933건, 2007년 5,707건, 2008년 7,962건으로 증가했다(통계청 2008). 최근 들어서는 국제결혼 4쌍 중 한 쌍이 이혼할 만큼 국제결혼의 ‘뽀’만큼이나 이혼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이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주여성들은 그 후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선택을 어떻게, 왜 내리는가? 이혼 사유에 있어서는 국제결혼 부부와 한국인 부부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주여성들에게 이혼은 중층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결혼 상대가 이들의 한국 체류 자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들의 ‘이혼 이후의 삶’은 한국에서는 잊혀진 현실이다.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머물러있지 않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된다. 여성들의 모국에서 양육되는 한국 아이들 또한 ‘영토 바깥의’ 존재들로 관심에서 멀어진다. 결국 이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전형적으로 방법론적 내쇼널리즘(nationalism)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방법론적 내쇼널리즘이란 국민국가를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적이며 정치적 형태로 간주하는 관점이며, 이 때문에 사회적 분석과 상상력 자체가 ‘영토화’, ‘본질화’ 된 상황을 뜻한다(Wimmer, Andreas and Schiller, Glick 2002). 이러한 관점으로는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온 ‘이주자’의 관리와 통합에만 주목하게 되고, 이주자를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영토를 벗어난 국가 ‘경계 밖’ 존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해진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를 한국에서 기를 수 없는 경우, 여성과 아이들 모두 관심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무를 한국 영토 안에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한국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종종 결혼이주여성의 스토리는 한국 안에서의 적응과 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국제결혼은 '초국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띤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스토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속되게 마련이다. 본 논문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통합 담론이 방법론적 내쇼널리즘에 입각한 이주자 관리에 매몰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즉,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담론은 여성들이 한국 가족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완성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에게 결혼이나 이혼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권이나 기타 사회권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족 해체 이후 이들의 삶은 급격하게 주변화되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국적의 남성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벗어난 이주여성들은 젠더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블'에도 불구하고 잘 다뤄지지 않았던 귀환 이주여성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해체된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와 귀환 결정에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작동하고 있는가와 귀환 여성들이 초기 귀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유보성에 대해 분석한다. 귀환 여성에 대한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자의 장기적 연구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혼 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귀환 여성의 대부분은 소위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연자마자 결혼관계를 파기한 이들도 아니고, 한국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순탄하거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성공 모델’의 주인공 또한 아니다. 이들은 위장결혼이라는 부도덕한 이미지와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범 이주여성이라는 이분법에 가려져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평범한 여성들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한 이들이다. 한편, 별거나 이혼 이후에도 고국으로의 귀환을 유보하는 여성들 또한 있다. 이들은 한국인 아이의 어머니임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양육권 및 ‘체류권’의 영역 안에서 불예측적인 삶을 살아간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 관계가 현실적으로 종식되었음에도 떠나지 못한 채 ‘남을 것인가’와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성들과, 연구자가 몽골과 베트남에서 만난 ‘귀환 여성’들의 스토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귀환과 체류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과 실제로 귀환한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약과 가능성들을 분석한다.

## 2. 귀환이주와 젠더

귀환이주란 일반적으로 ‘재정착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주자들의 이동(Gmelch 1980:136)’을 의미한다. 귀환이주가 이주의 한 연구 분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주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가는 단선적 혹은 일방향적 흐름이 아니라, 흐름과 역흐름을 포괄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Gmelch 1980:136). 이런 의미에서 귀환이주는 이주 동기, 귀환 이후의 적응과 재적응, 귀환이주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주제로 다룬다.

일반적으로 유입국에서 귀환을 부추기는 배출 요인은 비우호적인 경제적 상황과 조건들, 민족적 혹은 인종적 편견 및 차별과 배제 등이 있으며, 송출국으로 귀환을 촉진시키는 흡입요인으로는 가족, 친구들과의 결합에

대한 욕구, 부모 부양 및 간호, 고향에 대한 향수와 경제적 요인 등이 있다(Gmelch 1980:138-142). 일반적으로 오랜 이주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귀환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멀리 떨어져 살아온 가족과의 재결합이다. 이는 가족 내 부재했던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해 나가거나,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가족 및 커뮤니티에서의 지위를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주자는 귀환을 통해 이주국에서 획득한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운반할 뿐 아니라 노동기술, 저축액의 투자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을 통해 자신의 가족, 고향 및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Gmelch 1980:146-155). 물론 귀환은 이주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물을 본국으로 운반하는 사건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또한 그 시기나 선택은 우연적이고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장수현이 지적하고 있듯이 귀환은 유입국에서의 삶의 불안정성, 불예측성 및 주변성에 기인한다(장수현, 2010). 귀환 결정은 이주자의 전 생애 과정속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낸 화교들의 중국 귀환 이주를 연구한 이창호는 이들이 한국에 사는 가족과 헤어져 중국으로 이민하는 이유를 중국적 ‘재문화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해석한다(이창호, 2012).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도 이주자의 귀환과 귀환 이후의 재정착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채수홍 2007; 한건수 2008; 양혜우 2011; 이세기 2012). 귀환 이후 이들의 정착 여부는 그간 축적한 물적 재산과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skype), 영상 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과의 상시적 연락과 감정적 교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귀환 이주자의 본국에서의 재정착은 이들이 이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는지의 여부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유입국에서 모델이 될만한 이주자의 전형을 만들어내듯이, 본국에서는 ‘성공한’ 귀환이주자의 전형을 만들어낸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의 경우 고향이나 현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가 한국에서의 고생이나 장기 노동의 결과물로서 재산형성의 지표가 된다(채수홍 2007:22). 그러나 최근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

플레이션으로, 지난한 축적 기간에 대비하여 소비의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고달픈 이주 노동은 안정적인 재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귀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현지 베트남 노동자들에 비해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모으지만 귀환 후 자발적 또는 불연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이면서 재정착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수홍은 이주자들이 귀환 후 고국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정신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며 위안을 얻거나, 실업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귀환자의 한국에 대한 기억 서사를 '경험의 산물'로 인정해주지만,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방황함에 따라 가족·친지와 감정적 결속 또한 약해진다. 귀환한 이주자들은 한국적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려 노력하지만, 가족들은 이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귀환노동자와 친지 사이에 '사회문화적 거리감'이 형성된다(채수홍 2007). 한편, 귀환이주자들은 한국에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노동권, 인권 등의 이데올로기적 경관을 구성해내며 재정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양혜우 2011).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입국 정부와 국내외 이주지원단체들은 이주자의 귀환을 통해 미등록이주자의 수를 줄이고, 재이주 이후의 정착을 지원하는 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김나경 2012).

귀환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귀환 이주자의 젠더 문제를 다룬 연구물은 부족한 편이다. 노동이주, 결혼이주, 은퇴이주 등 이주의 성격에 따라 귀환의 의미가 다르며, 귀환에 대한 이주자의 관점과 태도에도 '성별성'이 존재한다. 바로우(Barou, 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주자들은 유입국에서 획득한 이점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주자에 비해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Brettell 2000:110에서 재인용). 그멜치와 그멜치(Gmelch & Gmelch, 1995)는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환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귀환 동기를 문

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귀환 이후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여성이주자는 고국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은 고용기회,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의 불이익을 직면함으로써 통제력과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이들은 남성이주자에 비해 귀환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재정착하는 데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회구조가 제한된 고향마을에서는, 이 여성들이 해외 도시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경제적·문화적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비되는 고립과 지루함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이들이 소유한 좋은 집과 차, 자녀 교육은 마을 사람들에게 '질투'와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들이 각종 루머에 연루되는 원인이 된다. 중동에 가사노동자로 이주한 스리랑카 기혼 여성들의 송금과 젠더 질서의 관계에 대한 갬버드(Gamburd, 2000)의 연구는, 귀환한 여성들이 작은 시골마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여성들의 해외 이주가 가져온 경제적 자원, 즉 생활비, 땅, 새 집은 전통적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투자로 변형되기도 하고, 귀환 여성들이 남편의 가족과 본 가족,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귀환 여성의 경제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재정착'하기 위해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에 재순응하며 이주가 가져온 새로운 경험을 빠른 순간에 '삭제' 또는 '희석'해 나가기도 한다.

모든 경제 이주자들이 그렇듯이, '더 나은 삶' 또는 '삶 자체를 바꿔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택한 여성들의 귀환 또한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 속에서 결정된다. 주로 남성 경제 이주자들의 귀환 과정과 귀환 이후의 정착 과정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 내 젠더 역할의 국제적 분업 체제에 바탕을 두고 구현되는 결혼 여성 이주자의 귀환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여성들은 유입국의 가족 구성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재생산 영역의 이주자'다. 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국제 이주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사일, 육아, 살림 등의 '재생산'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노

동으로 의미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은 제조업 등의 생산 영역보다는 아이나 환자를 돌보고,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산’ 영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주 노동을 수행하지만 ‘임금’ 노동자처럼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거나 기대하며 이주를 떠난다.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면 이들에게는 남편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사라지고, 고국에 전이할 기술이나 문화적 자원도 획득할 수 없는 채 귀환해야 한다. 이들은 오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고향을 방문하는 이민자도 아니고, 경제적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노동 이주자도 아니다. 가족 구성을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결혼이주자들에게 이주 목적은 ‘더 나은 삶’이라는 장기적이고 모호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은 종종 환영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루머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과 몽골 귀환 여성의 면접 사례를 통해 귀환 결정과 귀환 경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귀환 여성에 대한 사례는 2007년 필자의 연구 책임하에 진행된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시 현지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집된 사례와, 별거와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했다.<sup>10)</sup> 또한 2009년 유엔인권정책센터 주관 하에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1명의 귀환 여성 사례를 참고했다. 이외 별거나 이혼 후

10) 김현미, 김기돈, 김민정, 김정선, 김철효,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에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몽골 여성의 사례를 분석했다. 본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면접사례와 면접일시는 다음과 같다.

## 1) 귀환여성

이름(가명)	국적	조사일	조사장소
웅크졸	몽골	2007.10.27	울란바토르
안다크	몽골	2007.10.27	울란바토르
야크졸	몽골	2007.10.27	울란바토르
팜티미	베트남	2007.09.21	호치민
호티유엔	베트남	2007.09.21	호치민
밍	베트남	2007.11.23	전화면접
딩티란	베트남	2009.12.16	호치민

## 2) 한국체류 별거 및 이혼여성

이름 (가명)	국적	조사일	조사장소
전호이	베트남	2005.04.03	안양
동틴	베트남	2005.11.25	안양
타르마	몽골	2007.10.14	고양
호티리엔	베트남	2012.09.02	남양주

이 외 2005, 2006, 2009, 2012년 베트남 현지조사시 면접한 베트남 주재 한국 영사들이 제공한 자료와 여성관련 단체들에 대한 면접 자료와 2006, 2007년 몽골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참고했다. 모든 사례의 이름은 가명이다.

#### 4. 결혼 관계의 해체와 종식

몽골과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상업적 중개업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짧은 맞선과 성혼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속성상 여성들은 남성의 직업이나 경제능력과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믿고 결혼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런 결혼을 감정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남성의 이미지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수준, 도시의 화려함, 흡사 리조트와 같은 농촌을 한국의 이미지로 상상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드라마에서 보이는 남녀의 연애, 친절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이 여성들의 환상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 이주한 후 이러한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해 들은 남편의 직업, 사는 곳, 경제적 상황들은 사실과 달랐다(김현미 2011). 이 때문에 한국에 온 후 1년 이내에 이혼하는 여성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많은 여성들이 한국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는 이혼과 사별이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이혼 전까지 결혼 기간은 평균 4.7년이었고, 출신국 별로는 캄보디아, 베트남의 경우가 각각 2.2년, 2.8년으로 태국이나 중국보다 결혼 기간이 짧았다. 이혼이나 별거 이유는 성격 차이(28.4%), 경제적 무능력(19.7%), 학대와 폭력(13.7%), 외도(12.7%),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9.4%), 음주 및 도박(8.8%),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 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이혼과 별거의 주된 원인으로 '학대 및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35.4%에 달하였다. 출신국 별로는, 베트남 여성의 23.8%, 필리핀 여성의 21.4%, 몽골 여성의 18.2%가 학대와 폭력을 이혼과 별거의 이유로 들었다.

이렇듯 국제결혼가족에서 폭력과 학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할 다양한 수단을 가지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한국인 남편은 유일한 애착의 대상이며 귀착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 이웃들의 ‘호의’와 ‘선의’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남편의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이 여성들에게 완전한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이주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고, 우리 사회가 그 폭력을 저지하거나 처벌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성들은 왜 자신이 폭력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폭력과 학대는 한국의 집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에게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결혼이주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 여성들은 또 다른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

모든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모두 이혼이나 결혼의 종말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회와 문화권은 폭력 남편의 행동을 교정하고 개선시킬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어른들의 훈시, 동네 사람들의 쑥덕거림과 빈정거림, 술을 자제하라는 잔소리, 노골적인 비판 등을 통해 남성의 기를 꺾고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위임을 알게 한다. 가족들 또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서 때로는 완력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집안의 명예를 이유로 남성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행동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각종 교정 프로그램에 데려가기도 한다. 폭력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 그 남성은 법적 제재를 통해 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가정 폭력의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 이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 남편의 가족의 폭력이 행사될지라도, 이를 막고 이들을 구출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없는 일이 빈번하다. 이 여성들은 표정으로, 신음으로 애타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주여성이 발화하는 고통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사건’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공정한 중재자

가 부재하다는 사실 또한 많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유발한다. 결혼한 여성들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 등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갖기 마련이다. 보통 한국 여성들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집을 나가 남편에게 ‘경중’을 울리고 남편의 행동이 교정되기를 기다린다. 때로는 무섭게 쫓아오는 남편을 피하기 위해 ‘친정’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남편의 ‘기가 꺾이기를 기대한다. 일부는 폭력 여성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머무르면서 결혼을 종식시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보통 여성들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하는 방법조차 이주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주여성들은 ‘집’을 나온 순간부터 ‘이탈자’로 표현되며 공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여성들이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은 ‘집’을 나간 순간 ‘이탈자’가 되고, 이후 출입국관리라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귀환한 몽골여성 야크줄씨는 시어머니의 학대가 심해 가출했다. 가출 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척 언니네 집에 머물며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함으로써 9일 만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고, 17일간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다 몽골로 귀환했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 대다수의 남편과 남편의 가족은 ‘여성이 감히 자신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여성을 ‘처벌’할 강력한 수단으로 지체 없이 실종 신고를 낸다. 남편의 ‘집’을 벗어난 이주여성은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고, 남편은 쉽게 이혼의 수순을 밟는다.

남편이나 남편 가족의 일방적 결정 하에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한국 남편과 이주여성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정한 중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주여성이 폭행을 당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경찰조차 “여성이 외국인임을 알고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거나”,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닌 “주변소란”의 가벼운

항목으로 기록하기도 한다(황정미, 2009:69-70). 2007년 3월에 한국에 갔지만 결혼 생활 2주 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 때문에 귀환한 옹크졸씨는, 남편의 폭력을 목격친 친구의 증언이나 사진도 별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한다.

친구가 출장으로 한국에 왔다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어요. 친구가 집에 온 날 남편은 술을 먹고 그냥 잤지만 다음날 친구가 있는데도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나를 보호하려고 앞에 막아섰더니 말리는 친구도 때렸어요. 친구가 맞아서 멍 든 제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에 찍었고 사진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어요. 경찰은 '가족 일'이라며 돌려보냈어요. (옹크졸)

경찰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을 결정하는 출입국과 사법부의 '인권 감수성' 또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2004년에 신설된 '혼인 파탄에 의한 간이귀화' 조항을 신설하여 파탄에 의한 책임, 즉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여성들은 한국에 남아 아이를 양육하고 향후 국적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탄의 책임이 없던 이주여성들이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던 기존의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나, 분명한 기준 없이 출입국 직원의 재량에 의해 이 조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문경연, 2010:5). 특히 이 조항은 이주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출입국 통제를 하는 직원이 참고하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상황과 맥락에 의거하여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혼 재판의 과정에서도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 법정에서 한국인 남편의 진술을 주된 신빙성을 갖춘 증거로 받아들여거나,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통역자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여 여성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난해한 법적 용어를 번

역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사인을 받는 경우와 같이 남편의 주도하에 이혼이 진행되도록 국가가 방조하는 경우도 생긴다. 국제결혼의 파탄이 남편이 주도한 일방적인 이혼이라도 대부분 합의 이혼이라는 판결이 난다. 따라서 이때 ‘합의’란 표현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합의 이혼’이란 한쪽의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아님을 뜻하기 때문에, 당사자 여성은 합의 이혼 후 체류연장이나 국적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간의 불화, 남편의 폭력, 상호 불신 등이 있더라도 이주여성들은 그것이 이혼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황정미의 연구에서 인용된 베트남 여성 G씨의 사례는 ‘합의 이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G씨는 평소 새벽부터 시택의 농장을 돌보고 또 동네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4만원씩 일당을 벌여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베트남 친정에도 송금을 하곤 했다. 남편이 하루는 법원에 가야 하니 밭일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혼 절차임을 G씨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의 법적 절차를 모르는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을 당한 셈이다. “판사가 “당신은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베트남 말로 통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황정미, 2009:68에서 재인용).”

이주여성들에게는 전문적인 통역이나 번역된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스스로를 대표해야 하지만, 한국어만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의사 표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혼 이후 삶의 불안정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한 베트남 여성은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그녀는 임신 3개월에 낙태 수술을 받고, 다음 날 법원으로 가서 이혼한 후, 당일 바로 공항으로 가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졌다(고현웅 외 2005:17). 이 여성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음을 알고 물어보려 했지만, ‘협의 이혼’ 과정에서 통역자였던 중개업자 즉 통역자는 “남편이 나를 데려올 때 돈을 썼고, 만약 위자료라도 받고 싶으면 협의 이혼서에 사인하라”고 말해서 협의 이혼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왔다. 이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고 본국 가족에게 위안도 얻을 겸 잠시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지, 낙태를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 가고 싶다고 말한 후 2주일의 기간 만에 이 여성은 낙태를 해야 했고, 이혼을 당한 채 돌려보내졌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바로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만한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준 사법적 권력은 이주 여성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에게는 남편이 곧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남편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장기간 폭력을 견디는 여성도 많다.

## 5. 귀환의 유보

별거나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에 남은 여성들 또한 많이 있다. 이들 중에는 본국에 돌아갈 비행기표 값을 모으기 위해 일하는 여성도 있고, 법적 소송 중인 여성도 있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 많은 이주여성들은 일단 한국의 남편 집을 떠나 남편과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친구 집이나 쉼터에 머무른다. 이들은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일자리를 찾는다. 결혼 생활을 종식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결혼중개료로 사용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여성들 또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세기 2012). 이 때문에 별거나 이혼 이후 이주여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일자

리를 얻는 것, 체류와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 남성이나 본국 남성의 보호망에 다시 들어가는 것, 한국의 쉼터와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나름대로의 합법적 체류와 일자리를 모색하는 것 등이 있다.

아이가 없는 여성은 귀환을 선택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의 선택지가 명료할 수 있으나 아이가 있는 여성일 경우 선택의 과정은 쉽지 않다. 이들이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데에 있어 관건은 ‘아이’ 문제다. 한국 남편과 재혼한 중국 여성이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본국에 두고 온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송금해야 하기 때문이다(문경연, 2010). ‘월경 모성’을 실현하기 위해 식당일이나 공장 일을 전전해야 하는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해 ‘미등록체류자’로 남게 된다.

2007년 경기도에서 만난 몽골 여성 타르마씨는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는 이유는 “7살짜리 아들이 교육은 한국에서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고,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남는다. 타르마씨의 경우,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난 상태였지만 국적을 얻지 못했고, 당시 비자가 곧 만기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한 후 그 일을 도왔다. 중개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였던 걸모습과 달리, 타르마씨는 “웃으면 웃는다고, 울면 운다”고 이유 없이 자신을 때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남편이 다른 몽골 여성과 외도를 하면서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남편은 한 건당 800만원의 중개료를 받으면서도 타르마씨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녀는 “외국인들은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쥐도 저축하기 힘들다”는 남편의 거짓말을 믿었다고 한다. 이렇게 타르마씨는 한국에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한국 사회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였다. 경쟁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중개업이 시들해지자 한국 남편은 몽골에 땅을 사서 밀

농사를 짓고 있다. 타르마씨는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영주권이나 국적도 얻지 못했고,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아 당시 비자 연장도 못한 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결혼 당시 직업이 없던 한국 남편은 몽골 여성인 타르마씨를 만나 그녀의 ‘몽골 자원’을 이용하여 중개업과 밀농사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획득했고, 나름의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한국으로 결혼해 온 타르마씨는 한국의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로 전락하여 몽골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체류할 권리도 얻지 못한 채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녀는 언제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헌신한다. 남편은 현재 몽골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타르마씨는 남편의 별 제재 없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면 타르마씨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 그녀에게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듯 남편 집에 머물렀다 떠났다는 반복하며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다.

남편과는 살 수 없지만 아이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주여성들의 절실한 희망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한 여성은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여성은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아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기 힘들다. 한국은 부계혈족주의가 강한 사회이기에 ‘아이’는 당연히 국민이며 아버지인 남성에게 귀속된다. 부모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구성되었다는 의미의 다문화가족을 ‘한국남성의 가족’과 동일시하는 이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 심지어 폭력이 심한 한국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데려오는 것조차 어렵다. 이 때문에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와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 남지만 남편이 못 찾아오도록 숨어버리는 여성들 또한 많다.

베트남 여성 호티리엔씨도 남편의 학대와 방기로 집을 떠났다. 2004년

입국한 호티리엔씨는 2010년 이혼을 당했다. 그녀가 국제결혼을 결정한 것은 언니가 한국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언니와 형부가 소개한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2007년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아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아이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온 부모를 모욕하고, 모두 집을 나가라고 했다. 남편은 구두쇠였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먹을 것을 사주지 않고 여성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를 보러 온 베트남 부모가 집에 머물면서 돈을 축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은 호티리엔씨가 가지고 있던 집 열쇠를 빼앗고 호티리엔씨와 부모와 아이를 내쫓았다. 호티리엔씨는 이후 한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에 왔다. 남편이 이혼하면 아이를 자신의 여동생에게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빼앗길까봐 이후 남편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다. 호티리엔씨는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를 베트남 친정에 보냈고 그 사이 일자리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도와 준 베트남 남성과 동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호티리엔씨는 아이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기르고 있다. 호티리엔씨는 남편이 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국적을 신청하러 갔고, 이때 이미 자신이 이혼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호티리엔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아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받게 될 차별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 아빠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아는 이상, 끊임없는 질문과 시달림을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호티리엔씨는 먼 미래에 베트남에 돌아가겠지만 아들은 한국 아이로서 한국에서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티리엔씨는 남편의 폭력과 학대로 집을 떠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되는 현실, 즉, 가출·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결정·본국 남성과 동거·미등록 지위로 전락이라는 생애 경험의 한 예를 보여준다.

아이가 있는 이주여성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편이

다. 이들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적인 일을 찾고, 주기적으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 거주하면서 돈을 벌고 다시 들어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 폭력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여성들 중 몇몇은 '아버지 없는 아이'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버지 없이 헌신적인 어머니가 자신을 키웠던 성장기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못된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격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여성들은 이혼과 별거를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인다(김현미 2011).

## 6. 귀환의 '낙인'

베트남, 몽골, 중국에서 만난 소위 '귀환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때로는 낯선 고통의 스토리로, 때로는 전형적인 젠더 억압의 서사로, 때로는 여전히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미래의 생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절박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모든 여성들이 귀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귀환 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낙인이다. 낙인은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국제결혼까지 감행했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망과 냉소를 포함한다.

2006년 몽골에 귀환한 안다크씨는 몽골에서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뵈었을 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몽골에 체류한 남편과 데이트를 즐겼다. 남편은 당시 병환이 있던 그녀 아버지의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약속했고, 안다크씨는 이런 남편을 정말 좋아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안다크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여권도 빼앗았다. 안다크씨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무서웠다고 한다. 안다크씨는 체류 연장을 하러 남편과 서울로 올라온 사이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도망쳤다.

그 후 이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소개 받아 5개월간 일을 했고, 비행기표를 마련하여 귀환했다. 처음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왜 결혼하냐?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며 결혼을 말렸지만, 안다크씨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자신도 남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에 귀환 이후 더욱 괴롭고 스스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2007년 베트남에 돌아온 귀환여성 팜 티 미씨는 당시 30세였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귀환 당시에는 ‘아무런 성과 없는 귀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돌아왔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한국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 왔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지요. (팜 티 미)

팜 티 미씨는 자신이 돈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빈손으로 돌아 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팜 티 미씨가 이렇듯 돈 없이 베트남에 귀환하는 과정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팜 티 미씨는 2006년 초,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베트남에 돌아왔다. 남편은 행동이 거칠고 심하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로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에는 함께 살던 언니들 눈치도 보이고,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한국에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갔으나 남편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팜 티 미씨는 다시 집을 나와 ‘쉽터’에 머물면서 직장을 잡아 일을 해보려 했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해주는 대신 ‘대가성 동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은 불가능하다. 이혼함으로써 결혼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베트

남 남성과 새로이 결혼할 수도, 대만에 가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팜 티 미씨의 삶은 ‘유보된’ 상태였다. 베트남의 언니, 오빠들은 “좀 더 노력을 해보야 하지 않느냐.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지”하며 걱정을 많이 한다. 팜 티 미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차마 언니, 오빠들에게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

2004년 한국에 입국한 후 2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도둑 누명을 씌우고 폭력을 휘둘러 남편에게 이혼 신청을 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온 호 티 유엔씨 또한 자신이 돌아온 것에 대해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기뻐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베트남에 돌아오지 말고 공장에서 일해 돈을 벌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만약 호 티 유엔씨가 한국에서 집을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다면, 즉 베트남에 곧장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한국 가족과 한국 사회로부터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부도덕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호 티 유엔씨는 결혼 초부터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이혼했지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호 티 유엔씨는 실제로 귀환 후 사회적 낙인과 주위의 손가락질로 더 많은 심적 고통을 경험했다. “베트남에서 이혼은 별로 큰 흠이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호 티 유엔씨의 말처럼, 국제결혼여성에게는 물질적인 욕망으로 고향을 떠난 여성이라는 편견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 또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들은 때로 “돈을 쫓다가 꼴 좋게 당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갔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본국의 집으로 돌아 온 여성들은 자신의 귀환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 이들은 가난한 집안을 살리는 효녀가 되지 못했고, 한국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지도 못했으며, 어떤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도 못했다. 이들은 빈손으

로 돌아온 무익한 존재들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의혹과 위로와 경멸이 섞인 질문으로 자신의 귀환 이유를 묻는 마을사람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국제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귀환한 여성이 사회적 적대감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5년에는 베트남의 한 지역에서 “결혼할 여성이 없다”며 남성들이 침묵시위를 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나 대만으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을 두고 “자본주의 나라에 몸을 팔았다. 베트남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알게 하리라.”와 같은 이야기가 유포되면서 귀환 여성들이 큰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귀환 이후 여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한 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폭력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매일 악몽에 시달리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엔터테이너’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성매매를 강요받아 업소에서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의 귀환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2003년 연구자는 필리핀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귀환 여성 여섯 명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 출신으로 이중 네 명은 결혼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매일 모여 함께 기도한다고 했다. 매일 모이는 이유를 두고 이들은, “우리가 당한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경험이고 또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로부터 위안을 받고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매일 만나는 것은 그들 중 누구도 동네 사람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알리거나 고통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감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여성들 또한, 필리핀에서 결혼이 잘못 된 여성의 경우 큰 낙인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도시 일’, 즉 업소일을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갑자기 돌아오는 여성들의 경우 마을에서 쉽게 소문과 낙인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귀환 여성들의 재정착 과정은 쉽지 않다. 팜 티 미씨는 국제결

혼을 하고 이혼한 여성은 “안 좋은 여성”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혼한 여성들에 비해 재혼을 하거나 아내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여성들이 ‘귀환’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의 주된 원인이다. 그 결과, 어렵게 귀환하여 집을 찾아온 여성들이 다시 집을 떠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개입이 없는 곳으로 이주하여 외롭게 사는 경우도 있었다.

## 7. 이중으로 잊혀진 존재들

앞서 제시된 통계에서 보듯이, 귀환한 여성들은 대개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후 1개월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남편과 결별하거나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개업자와 남편이 준 정보만 믿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남편에게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이해를 위해 ‘일’을 찾아 집을 나가기도 하고, 곧바로 법적인 해결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귀환한 여성 중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체류 자격을 획득하는 등, 한국 내 법적 성원권을 취득해가는 전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막강하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한국인 남편의 ‘의지’나 ‘배려’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남편의 동의나 ‘의지’가 없으면 이혼 서류조차 여성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귀환여성과 아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몽골과 베트남에서 만난 ‘귀환’ 여성들이 연구자와 같이 한국에서 온 학자나 활동가들을 만나려 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들의 ‘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이혼 상태인지를 모르는 경우

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자신이 왜 이혼당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여성도 있었다. 또한 이혼은 했지만 정식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여성, 이혼 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여성도 있었다. 팜 티 미씨는 귀환할 때 합의이혼 서류를 받지 못했고, 여전히 이혼 수속을 하지 못해 3년이 지난 2007년 당시까지도 ‘결혼한 여성’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남자 친구를 사귀는 생각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정식 이혼 서류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귀환여성들은 버스로 7~8시간이 걸리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어렵게 찾아가고도 “우리는 한국인을 다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짧은 답변만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조사를 갈 때마다 연구진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깨끗한 종결을 지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귀환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그나마 연구진들이 ‘한국에서 온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 여기고, 답변을 듣고 싶어 했다. 함께 현지 조사를 수행했던 이주여성지원활동가들은 늘 ‘긴급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상담을 하면서 분주했다.

3개월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2주간을 제외한 매일을 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렸던 옹크졸씨도 이혼하지 못하고 귀환한 사례다. 이혼하려면 남편한테 8,000불을 돌려줘야 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낙담한 그녀는 이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일은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어떻게든 폭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아 남편의 비위를 맞추었고, 남편이 10일간 유효한 왕복비행기표를 구해주어 몽골에 돌아왔다. 그리고 옹크졸씨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몽골에 돌아온 후 남편과 몇 번 전화를 했을 뿐이다. “술은 그만 마시는지, 시아버지 건강은 어떤지”를 묻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이혼 얘기만 나오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한국에 갈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정

식으로 이혼을 하러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비자는 이미 만기되었고,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비자를 받으려면 남편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웅크졸씨는 이혼이 유보된 애매모호한 상태로 몽골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귀환 후 이혼 서류를 받지 못해 본국에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 이주여성지원활동가들은 귀환여성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한국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고, 한국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주고, 서류를 떼서 여성에게 보내주는 ‘초국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혼서류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그 여성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일’이다. 이 여성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번역자와 공증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 수속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베트남 현지 조사 중들은 사례 가운데에는,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환한 사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귀환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귀환한 여성들은 자국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의 경우, 결혼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의지도 없었고, 이들의 법적 청산을 도와줄 민간단체나 변호사 등의 지원 그룹도 충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비용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두 국가에서 ‘잇혀진’, 법적으로 유보된 존재로 살고 있었다.

## 8. 초국적 양육의 가능성

이주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귀환하기도 한다. 아이를 데리고 ‘도피성’ 귀환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이 과연 ‘엄

마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를 되묻도록 한다. 이주여성은 이혼한 후에 양육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여성들에게 혈육인 아이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몰래, 또는 일방적 통보를 한 채 귀환한다. 2007년 아이를 데리고 귀국한 팜 티 미씨는 아이를 베트남대사관에 신고하고, 남편 몰래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왔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편이 자신에게 아이를 보낼 리 없었으므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 유일한 길은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이를 한국에 보낸다는 것은 아이와 영원히 떨어져 사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커서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싶어요. 나도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크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엄마로서 아이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 한국에 보내면 엄마를 곧 잊어버릴 거예요. (팜 티 미)

아이를 데리고 귀환한 여성들은 재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야크줄 씨는 28세에 남편이 축구팀 감독이고 월급도 많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한국에 왔고, 임신 상태에서 양육비청구포기각서를 쓰고 귀환하였다. 한국에 왔을 때에 남편은 축구장을 청소하는 사람이었고 장애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폭력과 학대가 극심하여 버티기 힘들었다. 남편은 재혼해서 아이 둘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인지 야크줄씨가 임신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낙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잘 먹지 못해 빈혈이 심했던 야크줄씨는 몽골 친정에 가서 한달 동안 쉬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던 야크줄씨는 마침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혼했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몽골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야크줄씨는 몽골 대학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느꼈다.

야크졸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중개업자는 야크졸씨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야크졸씨의 어머니가 한국과 몽골 두 군데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반응이 없었다. 야크졸씨의 어머니는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몽골 법에 따르면 이혼한 경우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법도 이혼한 부모의 양육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이 다른 국적 출신으로 이미 한국 땅을 떠나간 여성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다수의 귀환한 여성과 아이들이 ‘재통합’이 되는 데에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한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예전이라면 당연하게 누리던 주거, 교육, 양육 지원 서비스는 붕괴된 지 오래고, 모든 것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상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귀환여성과 자녀들의 사회 편입은 점차 힘들어지고 다시 사회의 주변계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높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결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경험하면서 성장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이 제한되기도 한다. 귀환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자신이지만 자기 아이의 ‘반’은 한국 아이란 점을 강조한다.

아이들 베트남 아이로 해서 신고해서 아이는 베트남 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호치민에 있는 한국사람 집에 가정부로 들어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아이도 호치민으로 데려와서 한국어를 하는 유치원에 보내서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아이는 베트남에 온 후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서, 제가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어요(명).

귀환한 이주여성들 가운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들의 경우, 이 아이들

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한국 아버지에서 태어난 초국적 한국 아이들(Transnational Korean Children, TKC)의 범주를 구성한다. 한국은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지만 이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가 '상혼'과 육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누가 이들을 양육할 책임을 갖는가? 두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아이와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렇듯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이주는 끝나지 않은, 지속되는(on-going)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사회가 맺는 관계, 한국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 9. 결론

귀환 여성 대부분이 본국 귀환 후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긴급한 목적 없이는 한국인과 만나기를 기피한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는 이미 '제한적'이고 '미완성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귀환 여성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귀환 과정과 초기 귀환 경험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이혼과 별거, 귀환 과정, 귀환 이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성적 위계와 부권제 가족제도의 폭력성에 관한 것이다.

이주여성은 한국의 부계중심의 가족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미등록 신분 이 되어 '추방'을 당하는 존재이다. 여성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가출한 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가족이 행사하는 권력은 막강하다. 문제는 이주여성에게 조정 및 협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한 중재를 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귀환 이후에도 한국인 남편과의 애매한 법적 관계를 청산하고 모국에서 삭제된 자신의 법적 신분을 새롭게 획득해야하는 지난한 재정착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잘 살지 못하고 돌아온 귀환 여성에 대한 본국의 시선 또한 이들에게 곱지 않기 때문에, 귀환

여성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상흔에 덧붙여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별할 경우,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내에서 개별화된 사회권을 행사하며 살기 어렵고 귀환 이후에도 본국 내에서 사회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 재정, 심리적인 재통합의 고단한 과정을 거친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잠재적인 갈등과 폭력은 국제결혼을 ‘인구 감소 위기의 해결책’이라며 공공연히 조장해온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다. 귀환 여성의 스토리는 국민국가주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가 겪는 인구 감소와 가족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대규모로 ‘유도된’ 이주자다. 그러나 유입 이후 한국 사회에 정주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어떤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귀환한 여성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본국의 노력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은 점차 “유보되고” “지체되어” 마침내 여성과 아이들은 “잊혀진” 존재로 남게 된다. 귀환 여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귀환 여성의 법적 청산이나 필요한 법적 지원을 도와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일 것이다. 적어도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여성의 희망에 따른 체류권 지원과 귀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모든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부과시키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이주는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초국적 한국 아이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초국적인 연대와 법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논문투고일: 2012.10.30, 심사확정일: 2012.12.06, 게재 확정일: 2012.12.17)

## 참고문헌

- 고현웅, 김현미, 소라미, 김정선, 김재원(2005),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 ·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 김나경(2012), “초국가시대 이주노동자 귀환에 관한 연구: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지원 컨소시엄 사례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20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비교한국학> 18(3).
- 김현미, 김기돈, 김민정, 김정선, 김철효(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 인권위원회.
- \_\_\_\_\_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부.
- 문경연(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여성부(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김승권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혜우(2011), “귀환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적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네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세기(2012), 『이주, 그 먼 길』, 후마니타스.
- 이창호(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45권 3호, 153-198쪽.
- 장수현(2010),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국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권 2호, 263-297쪽.
- 채수홍(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제13권 2호, 5-39쪽.

- 한건수(2008),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7권, 225-268쪽.
- 황정미(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성별 위계와 문화적 편견”,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사회를 만들다』, 김영옥 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5-78쪽.
- Barou, J(1996), “Portugais d'Auvergne. D'une Identité villageoise à l'Autre”, *Revue d'Auvergne*, 110(2): 147-159.
- Brettell, Caroline B(2000), “Theorizing Migration in Anthropology: The Social Construction of Networks, Identities, Communities, and Globalscapes,” In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ed. Brettell and Hollifield, Routledge.
- Gamburd(2000), *The Kitchen Spoon's Handle: Transnationalism and Sri Lanka's Migrant Housemaids*, Cornell University Press.
- Gmelch, George(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pp. 135-159.
- Gmelch, George, and Sharon Bohn Gmelch(1995), “Gender and Migration: The Readjustment of Women Migrants in Barbados, Ireland, and Newfoundland,” *Human Organization*, 54, pp. 470-473.
- Wimmer, Andreas and Schiller, Glick(2002),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beyond: nation-state building, migr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Global Networks*, 2,4, pp. 301-334.

〈Abstract〉

## The Social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Returned Marriage Migrants

**Kim, Hyun Mee** \*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eriences of returned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paying attention particularly to the processes that influence these marriage migrants' decision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elsewhere or to remain in South Korea when their marriage ends. The marriage migration of women to South Korea needs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that scrutinizes migration as a system that includes various flows and counter-flows. This calls for a shift away from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data includes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in Mongolia and Vietnam with returnees, and with women who have remained in South Korea. Upon their separation or divorce, these women's choices were severely constrained by their Korean husbands' pivotal role in completing the necessary legal clearance and hence in determining the women's rights to stay, as well as their ability to gain custody of their children. Women who have returned to their respective home countries were stigmatized by the fact they had returned home "empty-handed," with no success. These women's experiences draw our attention to the limited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akes in providing some form of protection for these women and in ensuring the resettlement of their children, since these women are "induced

---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migrants” who had once were mobilized by the government to resolve the Korean society’s low fertility crisis and to re-align the sex ratio imbalance in the local marriage market.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return migration, marriage migrant, methodological nationalism, divorce migration

